

의안번호	2126323
의 퇴 인	엄태영의원
회 답 일	2024. 2. 6.
추 계 번호	24C0078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중 기초연금액을 제외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2조 8,283억원, 2029년 3조 6,674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6조 2,910억원(연평균 3조 2,582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	연평균
소득인정액의 산정(안 제6조의3 제1항제4호 각목 신설)	28,283	30,585	32,584	34,784	36,674	162,910	32,582
－ 국비	23,407	25,312	26,967	28,787	30,352	134,824	26,965
－ 지방비	4,876	5,273	5,618	5,997	6,323	28,086	5,617

- 주: 1.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 2. 본 추계에서는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수 대비 65세 이상 생계급여-기초연금 동시수급자 비율 평균을 활용하여 대상자 수를 산출하고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였으나, 현행법상 기초연금 수급으로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지 못한 자 또는 급여액 감액을 우려하여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했던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수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증가할 수 있음
 3. 국비는 2024년 예산기준 평균 국고보조율 82.76%를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
 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의3제1항 (소득인정액의 산정)	○ 이전소득 산정 시 다음 각 목의 소득은 제외함(제4호) － 가. 「기초연금법」 제5조에 따른 기초연금액 － 나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, 제14조, 제15조, 제15조의2,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보상금, 생활조정수당, 간호수당, 부양가족수당, 무공영예수당 및 6·25전몰군경자녀수당 － 다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및 생활조정수당 － 라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－ 마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3에 따른 수당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6조의3제1항제4호 각목 신설 (소득인정액의 산정)	○	· 소득인정액 중 기초연금액 제외 시 추가 재정소요 추계 · 다만, 나~마목 신설에 따른 확대 규모 등 은 추정이 곤란하여 추계대상에서 제외

□ 개정안에 따라 이전소득에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수당 등(나~마목)을 제외하는 경우 수급자 수 증가 및 급여액 상승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,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추가재정소요의 추계가 불가능

- 소득인정액 산정 시 보훈급여금으로 인하여 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지지 않거나, 해당 요인으로 수급권 탈락을 우려하여 생계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자 등에 대한 정보를 현 시점에서 파악하기 곤란함
 - 수급권자에서 탈락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미 신청자의 소득인정액 등의 기초자료를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자료에 근거한 객관적인 추계가 불가능함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¹⁾
- 국비는 2024년도 예산에 적용한 평균 국고보조율(82.76%)이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

	(2023.11. 기준, 단위: %)				
	2025	2026	2027	2028	2029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2.2	2.2	2.1	2.1	2.1

-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“기초연금을 지급받는 65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”에 “기초연금액”을 곱하여 산출²⁾
 - “기초연금을 지급받는 65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”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65세 이상 인구 수와 보건복지부의 65세 이상 생계급여-기초연금 동시수급자 수 자료를 기초로 산출
 - 65세 이상 생계급여-기초연금 동시수급자 수를 단독수급자와 부부수급자로 분리하여 추계한 후, 2022년 기준 단독수급자와 부부수급자의 평균 수급액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해 산출함
 - 참고로, 부부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액의 20%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받고 있음
- 대상자는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65세 이상 생계급여-기초연금 동시수급자로, 2022년 기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65세 이상 인구 수에 65세 이상 생계급여-기초연금 동시수급자 비율 평균(6.8%)을 적용하여 산출
 - 기초연금 부부수급자의 경우 감액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독수급자 및 부부수급자 수를 각각 산출함
 - 65세 이상 생계급여-기초연금 수급가구 수 중 단독가구(82.3%) 및 부부가구(1인 2.1%, 2인 15.6%) 평균 비율을 적용하여 단독수급자 및 부부수급자 수를 각각 산출함

2)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 수급하는 가구의 경우, 기초연금액이 포함된 소득인정액은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 개정안으로 기초연금액만큼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

[표 2] 65세 이상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동시수급자 수(추정치): 2025~2029년

(단위: 명)

	2025	2026	2027	2028	2029
대상 수급자 수	712,691	754,116	786,114	821,924	848,765
－ 단독	586,246	620,321	646,642	676,099	698,178
－ 부부1인	14,944	15,812	16,483	17,234	17,797
－ 부부2인	111,502	117,983	122,989	128,591	132,791

주: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□ 기초연금액 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추계

- 65세 이상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동시수급자 중 부부2인 수급자는 기초연금액의 20%를 감액하여 지급받고 있음

[표 3] 1인당 연간 기초연금 제외금액(추정치): 2025~2029년

(단위: 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
단독	4,100,497	4,190,708	4,282,904	4,372,845	4,464,675
부부1인	4,075,047	4,164,698	4,256,322	4,345,704	4,436,964
부부2인	3,259,785	3,331,500	3,404,793	3,476,294	3,549,29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□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중 기초연금액을 제외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2조 8,283억원, 2029년 3조 6,674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6조 2,910억원(연평균 3조 2,582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	연평균
소득인정액의 산정 (안 제6조의3제1항제4호 각목 신설)	28,283	30,585	32,584	34,784	36,674	162,910	32,582
－ 국비	23,407	25,312	26,967	28,787	30,352	134,824	26,965
－ 지방비	4,876	5,273	5,618	5,997	6,323	28,086	5,617

주: 1.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 2. 본 추계에서는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수 대비 65세 이상 생계급여-기초연금 동시수급자 비율 평균을 활용하여 대상자 수를 산출하고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였으나, 현행법상 기초연금 수급으로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지 못한 자 또는 급여액 감액을 우려하여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했던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수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증가할 수 있음
 3. 국비는 2024년 예산기준 평균 국고보조율 82.76%를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
 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- 본 추계에서는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수 대비 65세 이상 생계급여-기초연금 동시수급자 비율 평균을 활용하여 대상자 수를 산출하고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였으나, 현행법상 기초연금 수급으로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지 못한 자 또는 급여액 감액을 우려하여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했던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수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증가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윤경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윤경	02-6788-4742	yoonklee@assembly.go.kr